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9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박주민·서미화·이성윤

황명선 • 이연희 • 한준호

염태영 • 전진숙 • 박정현

장경태 · 박균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조 제7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본문 중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을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합의하는 경우에는"을 "합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으로한다.

제12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위원회의 의결로"를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한 자는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 상정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 ----의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 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 -----합의하는 의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의 경우에는----.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민 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한 자는 소관 위원회 또는 청 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
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
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u>위원회의 의</u>
<u>결로</u>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u>⑦</u> ~ <u>⑨</u> (생 략)

<u>⑦</u>
위원회의 <u>의</u>
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
례만
<u>⑧</u> ~ <u>⑩</u>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